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1. 11 선고 2020가합519388 판결 [사해행위취소]

재판경과

서울고등법원 2022. 11. 23 선고 2021나2049681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1. 11 선고 2020가합519388 판결

전문

원고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씨에스

담당변호사 정우근

피고 1.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최용환, 이주현

2. 주식회사 B

3. 주식회사 C

피고 2, 3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평호

담당변호사 박성구

4. 주식회사 D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현규

5. 주식회사 E

6. 주식회사 F

7. G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승재

8. H 주식회사

9. I

변론 종결 2021. 9. 14.

판결 선고 2021. 11. 11.

주 문

1. 각 피고와 소외 주식회사 J 사이에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채권에 관하여 별지 목록 제2항 채권양도내역 기재와 같이 체결된 각 채권양도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 A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문 제1, 2항 및

주위적으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소외 K 주식회사가 2019. 4. 3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년 금제 11025호로 공탁한 589,089,345원 중 별지 목록 제2항 채권양도내역 기재 각 양도금액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 및 같은 내역 기재 각 판결 또는 화해권고결정에 의해 확정된 공탁금출급청구권을 양도한다는 의사표시를 하고, 대한민국(소관: 서울중앙지방법원 공탁공무원)에게 위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였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라.

예비적으로,

소외 K 주식회사가 2019. 4. 3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년 금제11025호로 공탁한
589,089,345원 중 517,059,805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이 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의 주식회사 J에 대한 신용보증

- 1) 원고는 담보능력이 미약한 기업의 채무 보증 등을 목적으로 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다.
- 2) 원고는 다음과 같이 주식회사 J(이하 'J'이라고만 한다)의 대출채무를 신용보증하였다.

2016. 3. 31.	중소기업은행	470,000,000	376,000,000	2020. 3. 27.
2016. 3. 31.	중소기업은행	360,000,000	306,000,000	2020. 3. 27.
2016. 4. 21.	중소기업은행	600,000,000	510,000,000	2019. 4. 19.
2018. 6. 20.	L은행	300,000,000	255,000,000	2019. 6. 19.

나. J의 피고들에 대한 채권양도

- 1) J은 K 주식회사(이하 'K'라고만 한다)에 대하여 2019. 3.경 599,089,345원의 물품대금채권(이하 '이 사건 물품대금채권'이라고만 한다)을 가지고 있었다.
- 2) J은 이 사건 물품대금채권 중 일부를 각 피고들에게 양도하였고, 그에 따른 확정일자 있는 양도통지가 2019. 3. 14.부터 2019. 4. 25.까지 사이에 K에 도달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채권양도'라고만 한다). 한편 주식회사 M(이하 'M'이라고만 한다)은 위 물품대금채권에 대하여 청구금액 12,484,890원의 채권가압류를 신청하여 2019. 4. 10. 가압류결정을 받았고(서울동부지방법원 2019카단50983호), 위 결정이 2019. 4. 12. K에 송달되었다. 위와 같은

채권양도 및 채권가압류 내역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피고 1. A주	2019. 3. 12.	168,852,450) 다만 K는 양도통지를 받은 후인 2019. 3. 27. 위 금액 중 10,000,000원을 피고 A 주식회사에 변제하였다.		168,852,450	2019. 3. 14.
피고 2. (주)B	2019. 3. 12.	41,865,395		210,717,845	2019. 3. 15.
피고 3. (주)C	2019. 3. 13.	228,383,052		439,100,897	2019. 3. 15.
소외 N	-	-	59,544,650) 이 사건에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알 수 없다.	498,645,547	2019. 3. 15.
피고 4. (주)D	2019. 3. 11.	58,238,761		556,884,308	2019. 3. 21.
이 사건 물품대금채권액	599,089,345				
피고 5. (주)E	2019. 3. 12.	65,546,680		622,430,988	2019. 4. 5.
피고 6. 주F	2019. 3. 29.	41,753,800		664,184,788	2019. 4. 9.
소외 M	-	-	12,484,890	676,669,678	2019. 4. 12.
피고 7. G	2019. 4. 22.	400,269,770		1,076,939,448	2019. 4. 23.
피고 8. H(주)	2019. 4. 23.	31,556,250		1,108,495,698	2019. 4. 25.
피고 9. I	2019. 4. 11.	117,534,480		1,226,030,178	2019. 4. 25.

3) K는 2019. 3. 27. 위 금액 중 10,000,000원을 피고 A 주식회사(이하 '피고 A'라고만 하고, 나머지 피고들에 대하여도 '주식회사'는 생략한다)에 변제하였다.

4) K는 2019. 4. 3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년 금제11025호로 피고들과 소외 N, J 11인을 피공탁자로 하여, 'K가 J과 채권양도금지특약이 있는 물품납품기본계약을 체결하였으나 10건의 채권양도통지가 송달되었고, 양수인들의 채권양도금지특약에 대한 선의 여부를 알 수 없으며, 2019. 4. 12. 채권자를 M, 채무자를 J로 하는 청구금액 12,484,890원의 채권가압류결정이 송달되었다'는

이유로 589,089,345원(= 599,089,345원 - 피고 A에 변제한 10,000,000원)을
혼합공탁하였다(이하 '이 사건 공탁금'이라고만 한다).

다. 관련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소송의 경과

- 1) 피고 A, B, C, G은 각각 나머지 피공탁자들을 상대로 이 사건 공탁금에 관한 출급청구권 확인의 소를 제기하였다.
- 2) 각 제1심법원은 피고 A·B·C에 대하여는 다른 피공탁자들에 우선하여 채권을 양수하였으므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있다고 판단하였고, 피고 G에 대하여는 이미 다른 피공탁자들 앞으로 물품대금채권액을 초과하여 채권양도 및 가압류가 이루어진 후 채권을 양수하였으므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각 제1심판결 내지 화해권고결정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 3) 한편 피고 D은 J을 상대로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았고 그대로 확정되었다. 관련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소송 내역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삽입을 위한 여백]

피고 1. A	원고 158,852,450	피고	피고	피고
피고 2. B	피고	원고 41,865,395	피고	피고
피고 3. C	피고	원고 228,383,052	피고	피고
소외 N	피고	피고	피고	피고
피고 4 D	피고	피고	원고 58,238,761	피고
피고 5. E	피고	피고	피고	피고
피고 6. F	피고	피고	피고	피고
소외 M	피고	피고	피고	피고
피고 7. G	피고	피고	피고	원고 0(기각)
피고 8. H	피고	피고	피고	피고
피고 9. I	피고	피고	피고	피고
J	피고	피고	피고	피고

라. 원고의 대출채무 대위변제

- 1) J은 2019. 4. 19.경 만기가 도래한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9. 10. 17. 중소기업은행에 1,169,505,877원, L은행에 260,786,054원을 대위변제하였다.

2) 원고는 J을 상대로 '대위변제금 및 이에 대한 확정손해금, 위약금 합계 1,430,793,021원 및 그중 대위변제금 1,424,352,450원에 대하여 2019. 10. 17.부터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까지는 연 8%,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20. 3. 3. 지급명령(독촉절차비용 586,900원 포함)을 받았고(대구지방법원 2020차전3049호), 위 지급명령은 2020. 3. 24. 그대로 확정되었다.

3) 원고는 1,474,461,703원의 '대위변제증서에 의한 구상금 채권'을 청구채권으로 'J이 대한민국에 대하여 가지는 이 사건 공탁금 출급청구권 및 공탁일 이후 발생한 이자금 채권'에 관한 채권가압류를 신청하여 2020. 3. 11. 인용결정을 받았고(대구지방법원 2020카단31250호), 위 결정은 2020. 3. 24.경 J에 송달되었다.

4) 원고는 확정된 위 지급명령정본에 기초하여 'J이 대한민국에 대하여 가지는 이 사건 공탁금 출급청구권 중 517,059,805원 부분'에 관하여 채권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여 2020. 4. 9. 인용결정을 받았고(대구지방법원 2020타채106004호), 위 결정은 2020. 4. 13. 대한민국에, 2020. 5. 4. J에 각 송달되어 2020. 5. 12. 그대로 확정되었다(이하 '이 사건 전부명령'이라고만 한다).

[인정 근거]

○ 피고 E, F, H, I: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

○ 나머지 피고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7, 9~19, 27~29호증, 을가 제2, 3, 7, 8호증, 을나 제3호증, 을라 제1, 2, 6호증, 을사 제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요건사실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기초 사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 사정들 즉 ① 원고는 2016. 3. 31. ~ 2018. 6. 20. J의 대출채무를 신용보증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채권양도일인 2019. 3. 12. ~ 2019. 4. 11. 당시 이미

구상금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었던 점, ② J은 이 사건 각 채권양도일 무렵인 2019. 4. 19.경 만기가 도래한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채권양도일 당시 이미 원고의 J에 대한 구상금 채권이 성립하리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므로, 위 구상금 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이 사건 각 채권양도의 사해행위 해당 여부

1) J의 채무초과상태 이 사건 각 채권양도일 무렵 J은 다음과 같이 소극재산이 적극재산보다 많은 채무초과상태에 있었고, 이러한 채무초과상태는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표 삽입을 위한 여백]

서울 성동구 O건물 P호 (이하 '이 사건 ○ 건물')4) 이 사건 ○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기재된 거래가액(2019. 4. 16.) 기준	1,760,000,000	갑21
이 사건 물품대금채권	599,089,345	기초 사실
주식회사 M에 대한 물품대금채권	95,249,261	갑23
적극재산 합계	2,454,338,606	
기업은행에 대한 대출채무	-2,039,290,000	갑22-1
L은행에 대한 대출채무5) 이 사건 ○ 건물에 설정되었던 L은행의 근저당권 피담보채무 12억 원 포함(2019. 4. 16. 매매와 동시에 말소되었다)	-1,900,000,000	갑21, 22-2
Q에 대한 채무6) 이 사건 ○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기재된 채권최고액 기준	-300,000,000	갑21
R에 대한 채무(원금)	-350,000,000	갑24
소극재산 합계	-4,589,290,000	
재산 합계	-2,134,951,394	

[피고 A, B, C, D, G은 J에 대한 채무의 변제로 이 사건 물품대금채권을 양도받았다고 주장하는데, 위 피고들의 주장에 따르면 J의 소극재산은 위 표에 기재된 것보다 더욱 늘어난다.]

2) 사해행위의 성립 가) 관련 법리

채무자가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를 함으로써 일반채권자들을 위한 공동담보의 부족상태를 유발 또는 심화시킨 경우에 그 행위가 채권자취소의 대상인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는, 그 목적물이 채무자의 전체 책임재산 가운데에서 차지하는 비중, 무자력의 정도, 법률행위의 경제적 목적이 가지는

정당성 및 그 실현수단인 당해 행위의 상당성, 행위의 의무성 또는 상황의 불가피성, 공동담보의 부족 위험에 대한 채무자와 수익자의 인식의 정도 등 그 행위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행위가 궁극적으로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최종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채무초과의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여러 채권자 중 일부에게만 채무의 이행과 관련하여 그 채무의 본래 목적이 아닌 다른 채권 기타 적극재산을 양도하는 행위는, 채무자가 특정 채권자에게 채무 본지에 따른 변제를 하는 경우와는 달리 원칙적으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될 수 있고,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사해성의 일반적인 판단 기준에 비추어 그 행위가 궁극적으로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사해행위의 성립이 부정될 수 있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다28045 판결, 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1다107818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할 수 있는 다음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채무초과상태에 있던 J이 피고들에게 이 사건 물품대금채권을 각 양도한 것은 J의 채권자인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 ① 설령 피고들이 J과 계속적 거래관계에 있었고, J이 피고들에 대하여 물품대금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각 채권양도를 위 물품대금채무의 본지에 따른 변제로 볼 수는 없다.
- ② 이 사건 각 채권양도일 무렵 J의 적극재산으로는 이 사건 ○ 건물, 이 사건 물품대금채권, 주식회사 M에 대한 물품대금채권이 있었다. 그중 이 사건 ○ 건물에는 L은행 및 Q 명의의 각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그 채권최고액이 합계 16억 2,000만 원에 이르렀다. 결국 이 사건 ○ 건물의 실제 담보가치는 약 1억 4,000만 원(= 2019. 4. 16. 거래가액 17억 6,000만 원 - 16억 2,000만 원)에 불과하였고, J의 책임재산 중 이 사건 물품대금채권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다[599,089,345원 / (599,089,345원+140,000,000원+95,249,261원) = 71.8%].
- ③ 그런데 J은 2019. 3. 12.부터 2019. 4. 11.까지 사이에 피고들 및 소외 N에게 이 사건 물품대금채권을 양도하였고, 그 양도금액은 합계 1,213,545,288원으로7) 이 사건 물품대금채권액 599,089,345원을 훨씬 초과한다.

④ 그로부터 며칠 후인 2019. 4. 19. J은 만기가 도래한 기업은행 대출채무의 원금 5억 1,000만 원을 변제하지 못하였다(갑 제3호증의 4, 제5호증의 1, 제22호증의 1). 위 기업은행 대출채무는 원고가 신용보증한 채무이다.

3) J의 사해의사, 수익자인 피고들의 악의 가) 사해의사란 채무자가 법률행위를 함에 있어 그 채권자를 해함을 안다는 것이다. 여기서 '안다'고 함은 의도나 의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한 인식으로 충분하다. 결국 사해의사란 공동담보 부족에 의하여 채권자가 채권변제를 받기 어렵게 될 위험이 생긴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이며, 이러한 인식은 일반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있으면 족하고, 특정의 채권자를 해한다는 인식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7다63102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인정한 사실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J은 이 사건 각 채권양도로 인하여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게 된다는 사실을 알았을 것으로 보이고, 수익자인 피고들의 악의도 추정된다.

다) 피고 A·B·C·D·G은 J의 채무초과상태를 확인할 수 없었다거나 이 사건 각 채권양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항변하나, 위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추정을 뒤집고 각 피고가 선의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위 피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피고 A는 이 사건 채권양도 이전에는 J로부터 미수금의 변제조로 K에 대한 물품대금채권을 양수한 적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 A는 "K가 J에 대한 추가적인 물품 공급을 요청하면서, 'J의 K에 대한 물품대금채권을 양도받으면 되지 않겠느냐'고 먼저 제안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을가 제4호증(채권양도 이후 주고받은 이메일 내역), 제6호증의 기재만으로는 그와 같은 주장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피고 D은 '2017. 11. 12. 물품대금 지급을 담보하기 위해 최초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한 이후 기존의 채권양도계약서를 갱신하는 방법으로 채권양도계약을 유지해왔고, 이러한 구조에 대하여 K도 동의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을라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그와 같은 주장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피고 B는 J이 물품대금(단추) 지급을 지체하자 채권양도를 요청하였다고 주장하고,8) 피고 C도

J이 물품대금 지급일자를 확정하지 않고 옷감을 반품하자 즉시 변제 및 채권양도를 요청하였다고 주장한다.9) 피고 G은 J에 긴급 운영자금을 대여해주었고 이를 변제받기 위해 이 사건 물품대금채권을 양수한 것이라고 주장한다.10) 위 피고들의 주장에 비추어 보더라도 위 피고들은 적어도 이 사건 채권양도일 무렵에는 J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음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 사해행위의 취소

그렇다면 이 사건 각 채권양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한편 피고는 이 사건 각 채권양도가 채권양도금지특약에 반하여 무효라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사해행위의 대상이 되는 법률행위의 효력 유무는 사해행위 자체의 취소에 아무런 영향이 없으므로(예컨대 통정허위표시의 법률행위도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된다), 위 주장을 따로 판단할 필요는 없다].

라. 원상회복청구에 관하여

1) 관련 법리 채권자의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가 인정되면, 수익자 또는 전득자는 원상회복으로서 사해행위의 목적물을 채무자에게 반환할 의무를 지게 되고, 만일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서 사해행위 목적물의 가액 상당을 배상하여야 한다(대법원 1998. 5. 15. 선고 97다58316 판결, 대법원 2019. 4. 11. 선고 2018다203715 판결 등 참조).

채무자의 수익자에 대한 채권양도가 사해행위로 취소되는 경우, 수익자가 제3채무자에게서 아직 채권을 추심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수익자가 제3채무자에게 채권양도가 취소되었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도록 청구할 수 있다. 그런데 사해행위의 취소는 채권자와 수익자의 관계에서 상대적으로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법률행위를 무효로 하는 데에 그치고,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법률관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따라서 채무자의 수익자에 대한 채권양도가 사해행위로 취소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제3채무자에게 채권양도가 취소되었다는 취지의 통지가 이루어지더라도, 채권자와 수익자의 관계에서 채권이 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 취급될 뿐, 채무자가 직접 채권을 취득하여 권리자로 되는 것은 아니므로, 채권자는 채무자를 대위하여 제3채무자에게 채권에 관한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대법원 2015. 11.

17. 선고 2012다2743 판결 등 참조).

2) 주위적 원상회복청구에 관하여(피고 A에 대한 가액배상청구 부분 제외) 가) 원고는 피고 A, B, C, D에게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있음을 확인하는 취지의 승소판결 내지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음을 들어, 주위적 원상회복청구로 위 판결 내지 화해권고결정에서 확인된 공탁금출급청구권을 '원고에게' 양도하라는 취지의 채권양도에 관한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판결을 구하고 있다.

나) 그러나 공탁금출급청구권을 채무자인 J이 아니라 채권자인 원고에게 양도하는 것은 원물반환에 해당하지 않고, 달리 위와 같은 채권양도가 원상회복으로서 가능하다고 볼 법적 근거가 불분명하다. 이는 위 피고들에게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있음을 확인하는 취지의 재판이 확정되었다고 하여 달라지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의 원상회복청구 중 원고에게 공탁금출급청구권을 양도할 것을 구하는 의사의 진술 청구 부분은 이유 없다.

3) 예비적 원상회복청구에 관하여 가) 한편 원고는 예비적 원상회복청구로 이 사건 공탁금에 관한 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의 확인을 구한다. 구체적으로, 원고는 피공탁자 중 1인인 J을 채무자로 하여 그의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하여 이 사건 전부명령을 받았음을 들어,¹¹고 전부채권자로서 피고들을 상대로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을 구하고 있다.

나) 그런데 앞서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원상회복으로서 이 사건 공탁금출급청구권을 원고에게 양도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구하고 있을 뿐, 이 사건 각 채권양도에 관한 취소통지 내지 이 사건 공탁금출급청구권을 J에게 양도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구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 공탁금출급청구권이 J의 책임재산으로 당연히 복귀한다고 볼 수는 없다. 더구나 이 판결이 확정되고 그에 따른 의사의 통지가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이 사건 공탁금출급청구권을 J의 책임재산으로 취급할 수도 없으므로,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이 사건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다고 확인할 수도 없다. 결국 예비적 원상회복청구도 이유 없다.¹²4) 피고 A에 대한 1,000만 원 가액배상 청구에 관하여 다만 기초 사실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K는 2019. 3. 27. 이 사건 물품대금채권 중 1,000만 원을 피고 A에 변제하였다. 따라서 피고 A는 원고에게 가액배상으로 위와 같이 변제받은 1,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 다음 날부터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사해행위취소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되, 원상회복청구는 피고 A에 대한 1,000만 원
가액배상청구 부분에 한하여 이유 있고, 나머지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재판장판사이기선

판사박수진

판사현재언

별지

- 1) 다만 K는 양도통지를 받은 후인 2019. 3. 27. 위 금액 중 10,000,000원을 피고 A 주식회사에
변제하였다.
- 2) 이 사건에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알 수 없다.
- 3) 피고 G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에 대하여는 2019. 12. 4. 화해권고결정 피고 G에 대하여는
2020. 11. 25. 판결 선고
- 4) 이 사건 ○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기재된 거래가액(2019. 4. 16.) 기준
- 5) 이 사건 ○ 건물에 설정되었던 L은행의 근저당권 피담보채무 12억 원 포함(2019. 4. 16. 매매와
동시에 말소되었다)
- 6) 이 사건 ○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기재된 채권최고액 기준
- 7) M은 가압류채권자이므로 그 가압류금액을 양도금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 8) 2021. 4. 5.자 준비서면 8쪽
- 9) 2021. 4. 5.자 준비서면 10쪽
- 10) 2021. 5. 25.자 준비서면
- 11) 원고는 이 사건 공탁금에 관하여 피공탁자로 지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원칙적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기의 이름으로는 피고들을 상대로 공탁금출급청구권의 확인을 구할 수 없다.
- 12) 이 법원은 원고의 소송대리인에게 현 청구취지의 모순 여부 및 청구원인에 합당한 원상회복의

청구취지를 석명하였으나, 원고는 청구취지를 위와 같이 정리하였다.